



북구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건강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토론회

일시 : 2014년 12월 4일(목) 오후 6시30분

장소 :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평생학습누림터



노동자건강지원사업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동자건강지원사업단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미조직특별위원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노동사회위원회, 울산이주민센터,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 **협력기관** :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 울산세민병원

• **후 원** : 울산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

• 건강지원사업 자문의

강재훈, 김양호, 박상옥, 배락천, 신무철, 양동석, 유효성, 윤종수, 이영암, 한준영, 황대성

• 자원봉사

구혜숙, 김용화, 김치영, 김태근, 김현민, 김호규, 위경희, 이영도, 이은영, 전용국, 조돈희, 조문건, 조은정, 최윤정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교육위원회

배종국, 송두익, 박태경, 신호남, 안현호, 공상근, 장인석, 정동욱, 김억수, 이현호, 권혁세, 신민철, 이동현, 한 운, 박동규, 성맹호, 신현태, 윤윤석, 이수봉, 김용호, 신종재, 이재인, 권기장, 김재철, 김재화, 서정식, 최문진, 권상덕, 권영각, 김재환, 조승일, 김동은, 김상만, 박세원, 임대훈, 허성관, 구점본, 김영동, 이상필, 이현우, 임경우, 김원부, 손제진, 조양제, 홍성웅, 황현대, 김진욱, 양득윤, 양성식, 조광훈, 최기성

울산보건소 행복플러스 자원봉사회

강차선, 고은희, 권영선, 김경숙, 김경자, 김말련, 김명자, 김순연, 김영희, 빈미순, 손남식, 오현숙, 윤순금, 이말순, 이영숙, 이영애, 이옥선, 이옥희, 장현숙, 정경희, 정남필, 최길남, 최삼교, 최영춘, 최춘선, 홍성애

• 공단협의회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울산매곡일반산업단지협의회, 울산지식산업센터협의회



자료집 순서

- 경과보고 3
- 주발제] 북구지역 노동자건강지원사업 결과 및 방향 제언 11
 - 양동석 울산대학병원 재활의학전문의,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회장
- 보조발제]
 - 북구지역 노동자건강지원사업 평가 23
 - 홍미애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실장
 - 공단노동자 건강관리 현황 및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연계 방안 36
 - 최우정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
 -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현실 39
 -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참고자료 49
 - 사업계획서, 사업체 설문조사 내용, 건강검진 설문지



토론회 순서

- 참가자 소개 - 서로 인사나누기
- 경과보고
- **주발제] 북구지역 노동자건강지원사업 결과 및 방향 제언**
 - 양동석 울산대학병원 재활의학전문의,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회장
- **보조발제]**
 - 북구지역 노동자건강지원사업 평가**
 - 홍미애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실장
 - 공단노동자 건강관리 현황 및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연계 방안**
 - 최우정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
 -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현실**
 -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토론 및 제안



북구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건강지원사업

경과보고

노동자건강지원사업 진행 보고

■ **활동일지** (건강검진캠페인 일정 미포함)

일 시	장 소	내 용
6월 03일(화)10:00	울산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및 사업 문의
6월 12일(목)15:00	민주노총지역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실무자 간담회
6월 16일(월)18:00	민주노총지역본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 사업제안
7월 18일(금)16:30	울산시민연대	노동자건강지원사업 지역의료진 간담회
7월 25일(금)11:00	북구보건소	노동자건강지원사업 보건소 사업연계 제안 간담회
8월 1일(금)15:00	근로자건강센터	기획팀-울산근로자건강센터 간담회
8월 11일(월)13:00	울산이주민센터	기획팀 3차 기획팀회의
8월 11일(월)15:00	민주노총지역본부	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간담회(미비국,노안국)
8월 20일(수)13:00	울산이주민센터	기획팀 4차 기획팀회의
8월 22일(금)09:00	현대차치부교육위원실	교육위원회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연계 제안
8월 25일(월)18:00	센터회의실	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1차 전체회의
8월 27일(수)15:00	근로자건강센터	기획팀-근로자건강센터 실무조정회의
8월 28일(목)14:30	세민병원	노동자건강사업 세민병원 협조 및 지원요청
8월 29일(금)11:00	센터회의실	현대차치부교육위원회 자원담당팀장 간담회
9월 02일(화)15:00	매곡공단협의회	노동자지원사업 협조요청 간담회
9월 12일(금)18:00	센터교육장	노동자지원사업 캠페인단 교육
9월 29일(월)18:00	센터교육장	노동자지원사업단 전체회의
9월 29일(월)오후	성혜마을사무소	시례공단 건강검진 장소협조 요청
10월 6일(월)19:30	송강정	자문의 위촉 및 간담회
11월 3일(월)11:30	매곡공단	건강검진결과 미수령자 결과지 배포
11월 3일(월)15:00	울산이주민센터	기획팀 회의
11월10일(월)11:30	달천공단	건강검진결과 미수령자 결과지 배포
11월18일(화)19:30	울산이주민센터	건강검진결과 분석 회의
11월25일(월)19:30	송강정	건강검진결과 분석 및 자문의 모임

■ 건강지원캠페인 노동자 및 자원봉사자 참여 현황

일정	공단	문진	검진	자원봉사				
				시민단체	보건소	현자치부	의료진	합계
9/15(월)	매곡	65	48	9	6	3		18
9/16(화)				8	6	3	8	25
9/17(수)				2	6	2		10
9/18(목)				5	6	4	6	21
9/19(금)	달천	80	61	2	6	5		13
9/22(월)				2	5	4	11	22
9/23(화)				5	8	3		16
9/24(수)				취소				
9/25(목)				9	5	7	6	27
10/13(월)	효문	73	59	2	6	5		13
10/14(화)				3	8	4	5	20
10/15(수)				2	6	5		13
10/16(목)				5	6	5	5	21
10/17(금)	시례	20	20	2		5		7
10/22(수)				2				2
10/23(목)				7	6	5	5	23
합 계		238	188	65	80	60	46	251

건강교실 (검진결과 상담)						
일정	공단	장소	시간	참여자	의료진	자원봉사
10/1(수)	매곡공단	부품혁신센터 회의실	18:00	21	2	6
10/8(수)					2	3
10/15(수)	달천공단	공단협의회 회의실	18:00	32	2	2
10/22(수)					1	2
10/29(수)	효문공단	지식산업센터 1층 로비	18:00	20	1	2
11/5(수)					2	2
11/12(수)	시례공단	성혜마을사무소	18:00	13	2	2
※ 검진결과 미상담자 중 43명 상담이 필요함				86	12	19

■ 공단 업체현황 및 노동자수 대비 참가현황

공단명	업체수	참가수	노동자수	참가수
매곡산업단지	80	28	2,050	48
달천논공단지	81	24	1,617	61
지식산업센터	95	33	550	59
시례공단	191	10	495	20
합계	447	95	4,712	188

■ 검진자 현황

1. 성별 및 국적

성별구분	노동자수(이주노동자)	비고
남	139 (26)	이주노동자 31
여	49 (5)	

이주노동자 국적, 네팔 9명, 미얀마 1명, 방글라데시 2명, 베트남 3명, 인도네시아 2명, 중국 1명, 캄보디아 9명, 키르기스스탄 2명, 필리핀 1명, 미확인 1명

2. 업무구분

업무구분	노동자수	비고
생산직	85	
사무직	67	
서비스직	17	
기타	16	화물,사업주,가족노동 등
미확인	3	

3. 회사규모

회사규모	노동자수	비고
5인미만	54	
5~9인	34	
10~29인	48	
30~49인	7	
50~99인	18	
100인이상	9	
미확인	18	

4. 고용형태

고용형태	노동자수	비고
정규직	99	
비정규직	31	
미확인	58	기타포함

5. 계약기간

계약기간	노동자수	비고
정년보장	87	
2년이상	9	
1년 이상~2년 미만	20	
1개월 이상~1년 미만	6	운전,청소/관리,식당,사무보조 등
1개월 미만	2	일용직
미확인	64	

6. 근무형태

근무형태	노동자수	비고
정상근무	156	
고정야간근무	0	
교대근무	3	이주노동자
기타	2	
미확인	27	

7. 근무시간은 응답자 174명의 주간 총 노동시간을 6일 144시간으로 나눠 평균했을 경우 11시간이 나옴. (일주일에 평균 66시간을 근무)

8. 학력

학력	노동자수	비고
초등학교 졸업	0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중퇴 포함)	10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중퇴 포함)	62	
전문대학 졸업	16	
대학교 졸업(대학원 중퇴 포함)	42	
대학원 이상	5	
미확인	53	

9.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건강검진 경험 유무	노동자수	비고
건강검진을 받았다	85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57	
미확인	46	

9-1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유 - 57명에 대해

사유	노동자수	비고
시간이 없어서	10	
(작은) 작업장 이동	4	
사업장의 건강검진 미실시	2	
차일피일 미루다가	2	30대 남성
기타	1	프리랜서

※ 사업주 5명, 이주노동자 9명 제외. 나머지 통화연결이 안됨.

10.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병의원 이용 유무	노동자수	비고
있다	27	
없다	87	
미확인	74	

있다고 답한 27명의 사유는, 병의원 예약이 어려워서 1명, 본인이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7명, 병·의원 등에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1명, 증상이 가벼워서 4명, 기타 3명, 미확인 11명



발 제

북구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건강검진 결과

양 동 석

울산대학병원 재활의학전문의,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회장

북구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건강검진 결과

I. 사회스트레스 현황

1. 목 적

북구지역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작업 환경에 따른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방 법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를 이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정신 육체건강 측정치인 일반건강설문지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8점까지를 건강군, 9점에서 26점까지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위험 스트레스군 으로 분류하였다.

3. 결 과

전체 148명을 대상을 실시하였으며, 시례 18명, 효문 54명, 달천 33명 매곡 43명이 조사되었다.

① 사회스트레스 지표 점수는 평균 19.32 ± 7.36 이었으며 시례가 22.56 ± 6.79 로 가장 높았으며, 효문이 18.19 ± 7.33 로 가장 낮았으나 공단별 평균점수 차이는 없었다(표1).

② 건강군은 9명(6.1%)이며 효문 9.3%, 달천 6.1%, 시례 5.6%, 매곡 2.3%로 순이었다.

③ 고위험군은 26명(17.6%)이며 시례 38.9%(7명), 달천 18.2%(6명), 매곡 14.0%(6명), 효문 13.0%(7명)이 각각 해당되었다(표2).

사회스트레스 지표 (표1)

	전체	시례	효문	달천	매곡	p
	148	18	54	33	43	

인원(%)	106 (72.11)	11 (61.11)	38 (70.37)	23 (71.88)	34 (79.07)	0.532
녀 인원(%)	41 (27.89)	7 (38.89)	16 (29.63)	9 (28.13)	9 (20.93)	
나이	42.72±12.4	48.5±11.94	40.5±12.19	41.22±13.37	44.21±11.54	0.080
점수	19.32±7.36	22.56±6.79	18.19±7.33	19.36±7.27	19.35±7.52	0.190

공단별 각 스트레스 정도 분류(표2)

단위 : 인원(%)

	전체	시례	효문	달천	매곡	p
건강	9 (6.08)	1 (5.56)	5 (9.26)	2 (6.06)	1 (2.33)	0.180
잠재	113 (76.35)	10 (55.56)	42 (77.78)	25 (75.76)	36 (83.72)	
고위험	26 (17.57)	7 (38.89)	7 (12.96)	6 (18.18)	6 (13.95)	

④ 효문이 시례에 비하여 유의하게 고위험 군으로 갈 위험성이 감소하였다((교차비 4.46, p= 0.014)(표3)).

공단별 교차비 (표3) ref: 기준

	교차비		상위신뢰	p
시례	ref			
효문	0.217	0.064	0.737	0.014
달천	0.361	0.100	1.305	0.120
매곡	0.358	0.106	1.202	0.096

⑤ 잠재군과 건강군을 한 그룹으로 설정한 후 위험 그룹과 비교할 경우 효문과 매곡이 시례에 비하여 고위험군으로 될 위험이 낮았다((교차비 0.232, p= 0.026, 0.271, p=0.05)(표4)).

고위험 스트레스군과 타 군과의 교차비(표4) ref: 기준

	교차비		상위신뢰	p
시례	ref			
효문	0.232	0.064	0.837	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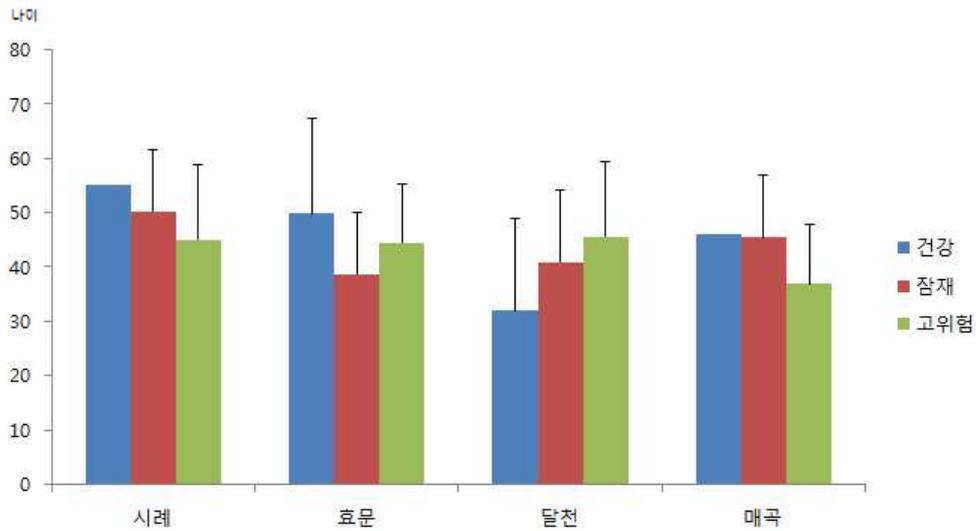
달천	0.365	0.096	1.391	0.140
매곡	0.271	0.074	0.999	0.050

⑥ 나이 및 성별에 따른 위험성은 공단별로 차이가 없었다.

⑦ 시례와 매곡 공단은 나이가 적을수록 달천공단은 나이가 많을수록 고위험이 될 경향성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5).

스트레스 정도와 나이 분포 (표5)

평가	전체	시례	효문	달천	매곡	요인	p
건강	46±16.04	55	49.8±17.5	32±16.97	46	지역	0.077
잠재	42.38±12.23	50.3±11.2	38.74±11.36	40.92±13.2	45.39±11.47	유소견	0.682
고위험	43.08±12.16	45±13.76	44.43±10.69	45.5±13.85	36.83±11.03	호작용	0.165



4. 결 론

건강군이 평균 6.08%에 불과하며 위험군이 17.57%에 해당되며 시례 공단은 38.89%로 상당히 높은 사회스트레스 지수를 보였다. 시례공단이 매곡과 효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위험군을 보여 이에 대한 적극적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할 것을 사료된다.

II. 근골격계 증상 현황

1. 목 적

북구지역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작업 환경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방 법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를 이용하여 각 신체부위별 통증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하여 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거나 조사자가 문답식으로 체크하였다. 유소견은 통증정도가 시각적 통증강도(VAS) 5이상으로 정의하였고, 다중소견은 VAS 5이면서 통증부위가 2군데 이상으로 하였다.

3. 결 과

전체 184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시례 20명, 효문 59명, 달천 57명 매곡 43명이 조사되었다.

- ① 유소견자는 35.87%(66명)였으며, 공단별로 시례가 가장 높은 50%(10명), 달천 42.11%(24명), 매곡 39.58%(19명), 효문 22.03%(13명) 순이었다.
- ② 시례가 타 공단에 비하여 나이와 유소견자가 유의하게 많았다(표1, 나이 $p = 0.002$, $p = 0.48$)).

공단별 유소견자 현황 (표1)

	전체	시례	효문	달천	매곡	p
인원 (%)	184	20	59	57	48	
남	136(73.91)	13(65)	41(69.49)	44(77.19)	38(79.17)	0.489
여	48(26.09)	7(35)	18(30.51)	13(22.81)	10(20.83)	
나이	41.77±12.71	49.3±11.62	40.58±12.1	38.19±13.38	44.33±11.5	0.002
아니오	118(64.13)	10(50)	46(77.97)	33(57.89)	29(60.42)	0.048
예	66(35.87)	10(50)	13(22.03)	24(42.11)	19(39.58)	

- ③ 나이를 보정한 상태에서 공단별 유소견자를 분석하여도 시례는 효문에 비하여 유의하게 유소견자가 많았다(표2, 교차비 =0.234, $p=0.011$).

나이와 성별에 따른 유소건의 위험성(표2)

		교차비		상위신뢰	p
성	별	1.516	0.75	3.063	0.247
나	이	0.98	0.955	1.006	0.125
시례		ref.			
위치	효문	0.234	0.077	0.715	0.011
	달천	0.606	0.206	1.784	0.364
	매곡	0.624	0.213	1.827	0.390

④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위는 허리, 어깨, 무릎, 팔꿈치, 목, 손목·손, 다리, 발 순서였다.

부위에 따른 유소견자 현황(표3)

		시례	효문	달천	매곡	p
허리	아니오	146(79.35)	17(85)	49(83.05)	39(68.42)	0.106
	예	38(20.65)	3(15)	10(16.95)	18(31.58)	
어깨	아니오	149(80.98)	13(65)	52(88.14)	46(80.7)	0.146
	예	35(19.02)	7(35)	7(11.86)	11(19.3)	
다리	아니오	181(98.37)	19(95)	58(98.31)	56(98.25)	0.499
	예	3(1.63)	1(5)	1(1.69)	1(1.75)	
발	아니오	182(98.91)	19(95)	58(98.31)	57(100)	0.273
	예	2(1.09)	1(5)	1(1.69)	0(0)	
팔꿈치	아니오	168(91.3)	18(90)	57(96.61)	50(87.72)	0.293
	예	16(8.7)	2(10)	2(3.39)	7(12.28)	
무릎	아니오	166(90.22)	17(85)	56(94.92)	52(91.23)	0.287
	예	18(9.78)	3(15)	3(5.08)	5(8.77)	
손목·손	아니오	174(94.57)	19(95)	57(96.61)	55(96.49)	0.398
	예	10(5.43)	1(5)	2(3.39)	2(3.51)	
목	아니오	172(93.48)	17(85)	58(98.31)	53(92.98)	0.130
	예	12(6.52)	3(15)	1(1.69)	4(7.02)	

⑤ VAS가 5이상이면서 두 군데 통증을 호소하는 다중부위 유소견자는 36명(19.57%)였으며, 공단별로 시례가 가장 높은 35%(7명), 달천 21.05%(12명), 매곡 20.83%(10명), 효문 11.86%(7명) 순이었다(표4).

공단별 다중 부위 유소견자 현황(표4)

공단 인원	전체 184	시례 20	효문 59	달천 57	매곡 48	p
아니오	148(80.43)	13(65)	52(88.14)	45(78.95)	38(79.17)	0.146
예	36(19.57)	7(35)	7(11.86)	12(21.05)	10(20.83)	

⑥ 나이와 성별과 유소견자의 상관성은 없었다. 이런 결과는 다중부위 유소견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4. 결 론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기초 설문조사에서 VAS 5의 유소견자가 22%~50%까지 있었으며, 특히 시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았다.

Ⅲ.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현황

1. 목 적

북구지역 소규모 사업장에서 평소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성인병의 조기진단 파악을 목적으로 시행함.

2. 방 법

일반건강검진형태로 흉부엑스레이를 제외한 혈압측정, 피검사, 소변검사,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였음.

3. 결 과

전체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례 20명, 효문 59명, 달천 60명, 매곡 48명이 조사되었음.

1) 전체 결과:

고혈압 55명(29%), 당뇨 5명(2%), 이상지질혈증 49명(26%), 간기능 이상 16명(8%), 빈혈 9명(4%), 소변검사상 이상소견 24명(12%)이 진단되었으며 그 중 이번 검진에서 최초로 진단된 군은 고혈압 36명, 당뇨 3명, 이상지질혈증

48명으로 각 질환으로 내과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88명(47%)이었음.

2) 각 질환별 결과

- ① 고혈압은 총 55명중 남자 47명, 여자 8명이며 평균나이는 45세, 유병율은 고령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② 당뇨는 5명 모두 남자였으며 평균나이는 49세. 이상지질혈증은 49명중 남자 43명 여자 6명이며 평균나이는 45세였음.
- ③ BMI는 60명(32%)이 비만에 해당되는 수치 (BMI>25)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2012년)의 비만인구 평균치인 32.8%와는 유사한 정도를 보이나 지역사회건강조사(2011년)에서 보이는 울산 비만인구평균치인 21% 보다는 다소 높게 측정됨

공단별 질환 및 진료필요자 현황

공단 인원	전체	시례	효문	달천	매곡
	187	20	59	60	48
고혈압	55(*36) 29/*19%	8(*2)	26(*18)	8(*5)	13(*11)
당뇨	5/*3 2/*1%	0	2(*1)	0	3(*2)
이상지혈증	49/*48 26/*25%	6(*6)	16(*16)	12(*11)	15(*15)
간기능이상	16(8%)	0	7	5	4
빈혈	9(4%)	1	3	2	3
소변검사이상	24(12%)	3	6	7	8
BMI(>25)	60(32%)	9	17	15	19
진료필요(BMI제외)	88(47%)	9	34	21	24
즉시진료 필요	6(3%)	2	2	1	1

* 이번에 새로 진단된 수

진료필요:위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즉시진료필요:BP 180eo TG 700-900대

4. 결 론

전반적으로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수치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검진자의 47%에서 의사의 진료나 투약이 필요하였음. 검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은 성인병의 조기발견 및 효과적인 이후 관리에 있어 취약함. 향후 이번 사업과 같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의 확대와 지속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대규모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들은 충분히 누리고 있는 일반건강검진의 기회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 또한 동등하게 접근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됨.

5. 한계 및 과제

- 1) 흉부엑스레이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가능하다면 일반건강검진에 준하는 시설로 검진을 진행하여 흉부엑스레이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고지의 미흡으로 인해 공복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공복혈당 및 이상지질혈증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2) 대상 근로자의 4%정도 만이 이번 검진에 참여함. 이후에는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음.

IV. 한계 및 과제

1.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상당히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사업장 규모(5인미만 또는 30인 이상), 근로형태(사무직, 생산직, 기타),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3. 전체 지역 노동자의 약 4%에 해당되어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4. 업무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조사가 필요하다.



보조발제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소개

 근로자건강센터 **울산**
1577-6497
1588-6497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근로자건강센터

“함께하면

건강해지는 곳 “

근로자건강센터 개소 현황



❖ 운영 배경

보건관리가 취약한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울산대학교병원과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센터유치

❖ 운영 목적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개인별 건강관리를 원활히 수행
-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성 증가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운영 방법



❖ 사업장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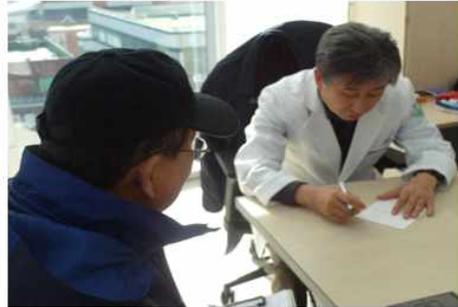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5조의 2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45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20조(사후관리 조치)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질병요관찰자(C1, C2)** 및 **질병유소견자(D1, D2)**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의사 소견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조치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제한, 건강상담,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해야 하는 조치를 말함.

(운영방법) 1. 건강상담

- 건강진단(일반/특수) 후 사후관리
-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소규모사업장 맞춤형 건강관리
- 업무 적합성 평가
- 이동상담
 - 특정 업종 밀집지역
(원거리 사업장, 제조업)



(운영방법) 2. 뇌,심혈관계질환계 예방

-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질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도움 드리기 위하여 보다 상호간 집중적인 관리 프로그램으로 안내함
- 금연 프로그램
 -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 절주 프로그램
 - 교육실시(알코올의 폐해, 바람직한 음주습관 등), 음주실태조사
- 운동 프로그램
 - 기초체력측정 및 근골예방실 연계
- 영양 프로그램
 - 질환에 따른 식단안내

기초검사 및 뇌심질환 예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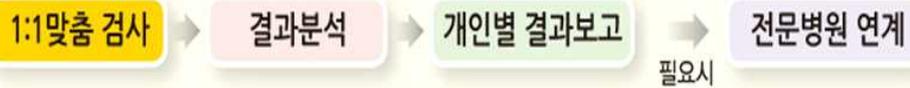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울산대학교병원 ULSAN UNIVERSITY HOSPITAL

(운영방법) 3.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 일과 삶 속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전문화된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검사 프로그램 : 심리상담사



- 자율신경계 스트레스 활성화도 검사
- 직무스트레스 검사, 성격유형검사
- 모든 상담은 비밀 유지 원칙

심리상담실



자율신경 균형검사기

(운영방법) 4. 근골격계질환예방 상담

- 내방하신 근로자 대한 개인별 운동처방 및 운동능력 평가
- 바른 작업 자세 유지를 위한 근력 및 균형능력 증가에 중점
-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아침체조(내몸관리 스트레칭) 전파
- 1회성 치료가 아닌 지속적인 운동 및 근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가정 프로그램 전파
-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에 관한 교육 시행
- 기초 체력 평가를 바탕으로 1:1 운동방법 제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휴먼메덱스



전동테이블 및 스타링



덤벨세트, 캐틀벨



안마의자



밸런스 돔볼



체력 측정장비

(운영방법) 5. 직업환경 상담

- 작업환경, 인간공학적 작업자세, 보호구의 올바른 사용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및 1:1 상담 교육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지도 및 상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GHS) 상담 및 컨설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안내 및 컨설팅

직업환경상담실



안전보호구



청력 부스



보호구착용 상담

이동상담 활동 사진



사업장 교육

- 사업장 보건교육 실시



규모 및 내부 시설

◆ 규모

- 전용면적 : 456.20m² (138평)
- 분양면적 : 495.87m² (150평)

◆ 내부시설

계	건강 상담실	뇌심혈관질환 예방실, 기초검사실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직업환경 상담실	직무스트레스 상담실	회의실, 자료실	휴게실	교육장
8실	2실	1실	1실	1실	1실	1실	1실	1실



☀ 뇌.심질환관리
☀ 근골질환관리
☀ 스트레스관리
☀ 직업환경관리

근로자에게는

1.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2. **병원진료비를 절감** 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1.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할 건강증진 활동과 사후관리를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여**
2. **무료로 관리** 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4. 근로자 **복리후생**에 기여

북구지역 노동자건강지원사업 평가

 근로자건강센터  울산
1577-6497
1588-6497

사업효과

1. 방문건강검진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접근성 용이
2. 산업단지 내 건강관리 환경 조성
3.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절감

사업 효과

4. 근로자에게 건강증진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행위 강화하는 긍정적인 인식변화

5. 근로자의 건강 이상 발견으로 조기 치료가능

6. 근로자건강증진 기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향후 제안

1. 건강상담의 연속성 제고

- 연2회 이상의 정기적인 건강상담 필요

2. 추가 적인 건강상담 필요

- 간호사의 생활습관 상담

- 근골격계질환자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지속적인 관리

향 후 제 안

1. 홍보의 강화
 - 개별사업장의 홍보 확대
2. 인력확보
 - 사업진행 전담인력의 추가 적인 확보의 필요성
3. 자원봉사자
 - 사업의 목적과 시스템에 대한 사전교육의 철저
4.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 복구청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감사합니다

공단노동자 건강관리 현황 및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연계 방안

최우정 울산광역시북구청 건강검진팀

□ 사업장 수 및 근로자 현황

요 약

-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가장 많으나, 소기업 비율은 소폭 감소 추세에 있고, 중소기업체 및 대기업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소기업은 그 특성상 직장 차원에서의 직원 건강관리가 어려워 이들을 위한 직장 단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추진전략이 요구됨.

<표 2-1-12> 사업장 및 근로자 수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장 수			근로자 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933(100.0)	967(100.0)	916(100.0)	41,405(100.0)	42,754(100.0)	46,883(100.0)
소기업	50인 미만	869(93.2)	900(93.1)	845(92.3)	7,455(18.0)	8,047(18.8)	7,718(16.4)
중 소 기업체	50 ~ 99인	40(4.3)	37(3.8)	44(4.8)	2,684(6.5)	2,483(5.8)	3,135(6.7)
	100 ~ 299인	19(2.0)	25(2.6)	20(2.2)	2,424(5.9)	3,378(7.9)	3,124(6.7)
대기업체	300 ~ 499인	1(0.1)	1(0.1)	3(0.3)	478(1.1)	433(1.0)	1,093(2.3)
	500 ~ 999인	3(0.3)	3(0.3)	3(0.3)	2,166(5.2)	2,215(5.2)	2,413(5.2)
	1,000인 이상	1(0.3)	1(0.1)	1(0.1)	26,198(63.3)	26,198(61.3)	29,400(62.7)

※ 자료원: 경제일자리과, 2013. 12. 31.

□ 북구 지역 산업체를 분류해 보면,

○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845(92.3%)로 가장 많으며, 중소기업체가 2011년 59개(6.3%)에서 64개(7.0%)로, 대기업은 5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함으로써 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소기업 비율은 소폭 감소 추세에 있고, 중소기업체 및 대기업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전체 근로자 수는 2011년 41,405명에서 약 13.2%인 5,478명이 증가하였고, 대기업체가 32,906명(7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중소기업체 및 대기업체의 경우, 직장 내 안전보건 및 건강관리가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는 편이나, 소기업은 그 특성상 직장 차원에서의 직원 건강관리가 어려워 이들을 위한 직장 단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추진전략이 요구됨.

□ 공단노동자 건강관리 현황

○ 2008년 북구보건소에서는 카톨릭의대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혈압관리 계획』 사업으로 매곡산업단지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행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혈압 조기 발견 및 관리함

○ 2009. 5. ~ 12.(8개월간) 사업 기간으로 혈압, 혈당, 혈액 검사 및 상담, 체성분 검사, 건강생활실천(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보건교육을 시행함

○ 총 참여사업장 6개소 참여인원 99명으로 만성질환 유소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흡연예방, 절주, 영양, 운동 등과 같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 공단 내 전체 근로자에게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및 사업장 내 분위기 확산 등이 어려웠음

○ 이후 사업추진이 300이상 근로자의 기업체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2013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관련 사업이 전무한 상태였음.

○ 이에, 20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을 계획하고 상반기 효문동에 위치한 울산지식산업센터에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한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 2015년에도 지속적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필요시 보건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 사업연계방안 논의

- 2015년 북구보건소와 근로자건강센터 사업협약체결 예정
-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운영시 협력하여 추진
- 건강검진 결과 상담시 영양 및 운동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 활용가능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3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인력 근무)
- 보건교육이 필요한 사업장 내 강사 파견
-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인원이 최소 10인 이상인 경우
 - 6주간 주 1회 금연상담사 출장 방문
 - 금연보조제(금연껌, 금연패치 등 물품지원)
 - 금연 문자메세지 및 전화 상담으로 추후 관리
 -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현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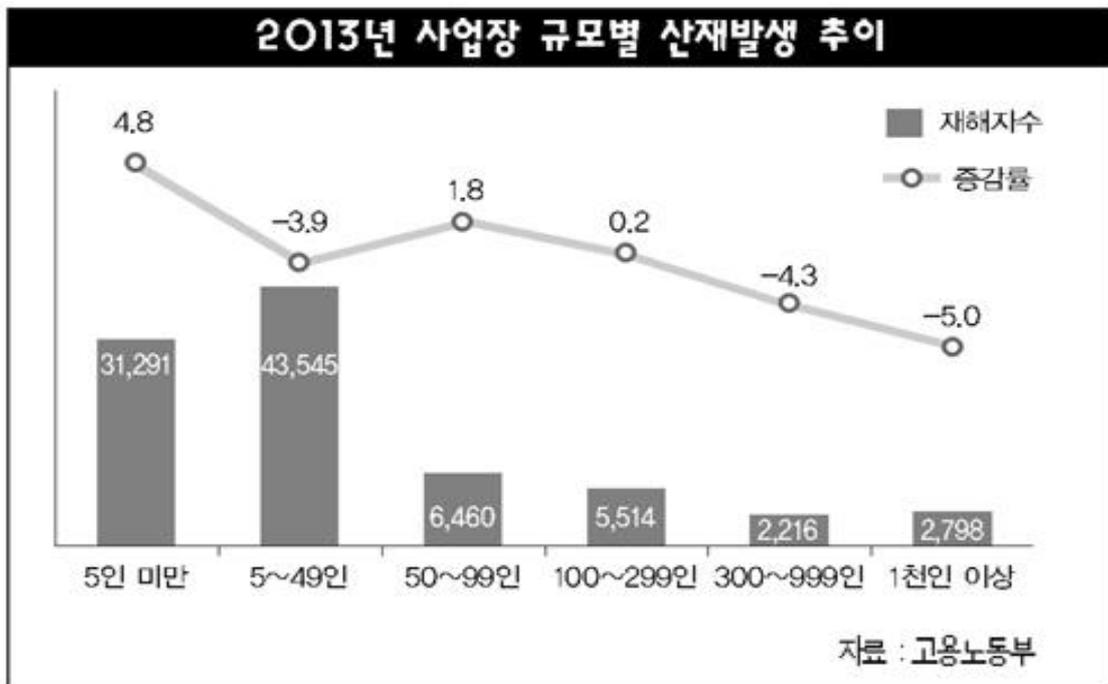
1. 노동자 건강권 현실

① 노동자 산재사망, 산재발생 심각하다.

- * 노동자들 12년간 매년 2,460명씩 산재사망
- * 매년 9만여명이 산재를 당하고 있음(노동부의 통계에 반영되는 것만 반영 됨)
- * 지난 11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73조 3천 9백 47억원으로 2014년 정부 총예산의 48% 수준 임.
- *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1위 임(2011년 산재사망만인율 0.96)

② 노동자 산재발생과 산재사망,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 사업장 규모별 산재현황]



- 2013년 노동부에 보고된 산재 중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 2013년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0.86%, 50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 0.25%
-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산재발생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5년 74%, 2008년 78.3%, 2011년 82.4%

○ 영세사업장에 산재가 다발하는 이유

- * 대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공정을 외주화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분담하지 않는다.
- *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주들이 안전보전에 대한 관리나 투자가 되지 않는다.
- *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
- * 안전교육 등 최소한의 노동자의 알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 *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받아 사실상 사업주가 안전보전에 대한 의식이 없다.
- * 산재은폐가 비일비재하여 유사한 재해가 반복된다.
- * 이주노동자들 취업이 늘면서 이주노동자에게 산재가 다발하고 있다.

③ 울산지역에서도 심각함은 동일하다

[울산지역 노동자 산재현황]

■ 울산지역 업종별 5년간 산재사고

연도	건설업		화학업		조선업		기타제조업		합계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2009	11	604	4	115	5	407	18	1,210	38	2,336
2010	18	610	3	98	4	365	19	1,050	46	2,123
2011	17	670	6	119	6	364	21	1,006	50	2,159
2012	24	607	5	126	17	409	23	1,061	69	2,203
2013	15	671	3	105	11	401	19	928	48	2,104

* 자료 : 울산고용노동지청

[자료출처 : 울산저널]

- 건설업 노동자들 산재사고와 산재사망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
- 울산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어 건설노동자 산재문제 대응이 되고 있지 못함. 다른 업종 노동자들에 비해 산재문제는 심각한데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거나 대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없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는 건설현장 담당자가 3명, 제조업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하다. 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이들이 관리하는 현장은 4,400여 곳에 달한다. 울산지사가 아무리 노력해 1천여 곳 이상 점검하는 건 무리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가 재해예방을 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산재예방과 사업주 교육을 담당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 역시 인력이 부족해 사전 안전점검보다는 사고 후 수습에 바쁘다(울산저널 기사에서 인용)
- 건설업의 경우 최저가 낙찰과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가 안전관리 막아.
- 산재발생 시 급여가 낮아서 대부분 공장 합의

④ 2014년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현황

- 2014년 현대중공업 그룹사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일지

사고일	재해내용	사업장 구분
3/7	오모씨, 야간작업 중 2톤 무게철판에 깔려 사망	현대상호중공업
3/20	박모씨, 족장작업 중 12m 높이에서 추락사	현대상호중공업
3/25	김모씨(선일이엔지), 선박 선수에서 족장거치대 무너지면서 바다로 추락사	현대중공업
4/7	정모씨, 테이프 제거작업 중 8m높이에서 추락사	현대미포조선
4/21	이모씨(지스콧), 김모씨(HK ENG), LPG선 화재사고로 질식사	현대중공업
4/26	정범식(서문), 샌딩작업 중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	현대중공업
4/28	김모씨, 야간 악천후 속에서 트랜스포터 신호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	현대중공업
8/23	조모씨(태형산업), 조기출근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현대중공업
10/23	안모씨(영수산업), 크레인 신호 중 3톤 중량물에 깔려 사망	현대중공업

10/25	이모씨(창성기업), 해치커버와 코밍 사이에 끼여 사망	현대중공업(군산)
11/27	이종백(금농산업),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추락사 한 것으로 추정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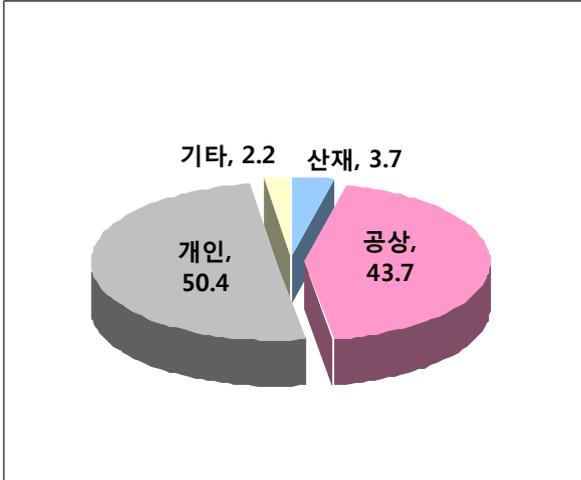
- 중대재해 피해자는 하청노동자 임
- 위험작업이 외주화 되었지만 안전관리는 전무 함
- 대부분 중대재해 원인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 함
- 단기계약노동자(물량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이 무분별하게 작업에 투입되면서 중대재해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남
- 고질적인 산재은폐와 유사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당하고 있음(현중하청지회 주1회 발행하는 노보에는 매주 산재노동자에 대한 탄압, 산재은폐, 산재복귀자에 대한 탄압 내용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임)
- 하청지회가 산재나 중대재해 사고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 안전점검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노동부 특별안전감독시에도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사실상 산재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이 봉쇄되어 있음.
- 반복적인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원청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안전관리는 원청에게 책임이 있으나 산재사고처리와 산재율의 집계는 하청업체로 되면서 원청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 임)
- 사회적으로 고용관계에 준한 책임이 아니라 당해 작업장 또는 작업 관할이 누구의 관리하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현장중심으로 책임관계를 설정해야 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노동자의 산재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규제가 만들어져야 함. 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을 고용관계에 기초하고 있지 않음. 한 마디로 같은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임금을 주는 사장이 누구이던 간에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발주처,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 되어 있음.
- 기업살인법 제정과 하청노동자 산재에 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 함.

⑤ 산재발생하면 개선은 고사하고 은폐에 급급하다.

- 현대중공업 원, 하청 실태조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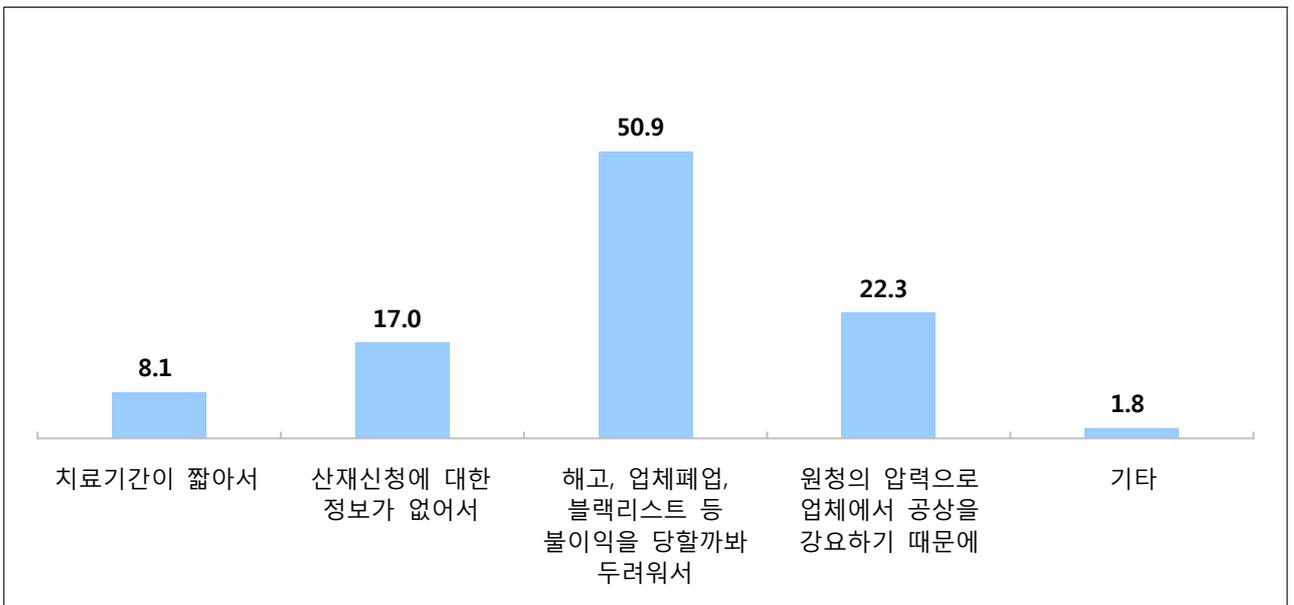
[업무상 재해나 질병 처리 유형]

(N=403, 단위: %)



[산재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N=1050, 단위: %)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산재은폐 실태조사(2012년)

- 대상자 : 울산지역 노동자 1,350명(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 조사 시기 : 2012년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조사자 :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 산재은폐 실태보고서 내용(부분 인용)

□ 응답자의 57.9% 재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산업 재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1,350명 중 913명으로 67.7%였으며, 재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35명으로 32.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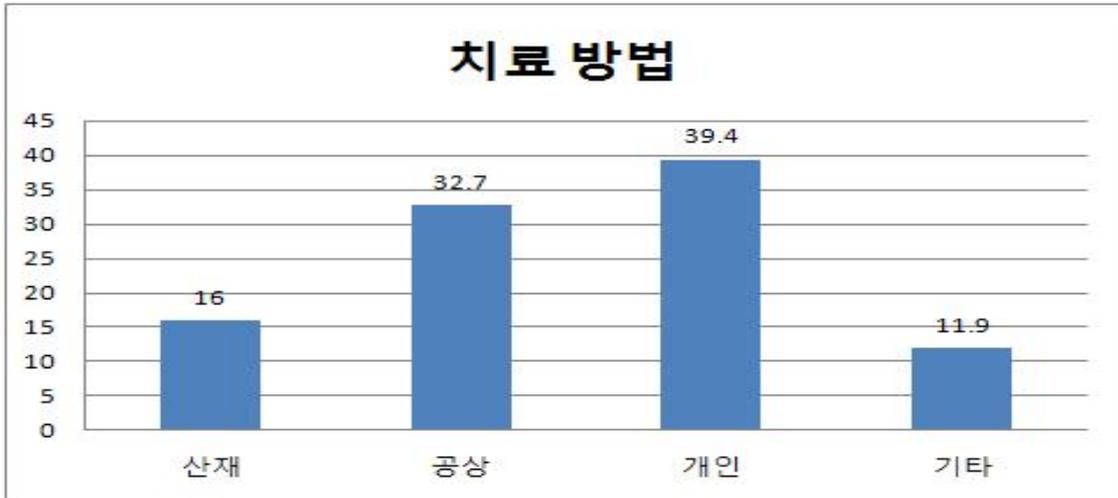
□ 응답자 재해유형별로 보면

[산업 재해 유형]

재해유형	빈도(중복응답)	비율(%)
추락	22	1.6
미끄러짐, 넘어짐	304	22.5
전복	12	0.9
충돌, 접촉	245	18.1
낙하	32	2.4
협착·감김	86	6.4
붕괴·무너짐	2	0.1
근골격계질환	333	24.7
이상온도 노출 및 접촉	30	2.2
감전	33	2.4
유해, 위험화학물질 노출 및 접촉	23	1.7
피부질환	78	5.8
화재·폭발·파열	8	0.6
체육행사 및 운동 중 사고	65	4.8
뇌심혈관계질환	11	0.8
기타 질환	12	0.9

□ 재해 발생 후 산재 처리는 16%에 불과, 나머지 공상 및 개인적으로 치료

산재 신청을 해야 할 대상 중 실제로 산재 처리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6%에 불과하였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32.7%로 응답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39.4%, 기타 11.9%로 응답하여 84%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공상 또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다.



○ 노동부 산재은폐조사 연구용역 보고서(2007년)

* 2007년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건강보험처리자 중 산재발생건수 108만건으로 추정. 2006년 산재건수는 8만 9천여건으로 조사건수의 1/12정도에 불과 함. 보고된 산재건수 12배에 이르는 숫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며 산재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실태조사(2012년~2014년)

- 2012년 산재은폐 조사 후 집단 진정(15건)
- 2013/7/5 2차 산재은폐 실태조사(2013년 3월12~22일까지) 후 집단 진정(40건
노동부 집단진정, 66건 건강보험공단 조사의뢰)
- * 조사방법 - 10여 개 지정 병원 방문 조사, 사례 발굴
- * 결과 - 정규직2건, 17개 업체 19건 총7천450만 원 과태료 처분
- 2013/10/23 3차 산재은폐 실태조사(9월9일~16일) 후 집단진정(25건)
- 2014/5/20 4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후 집단진정(86건)
- * 동구지역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25건), 산재상담과정을 통해 확인된 건(27건),
현대중공업 사고 즉보를 통해 확인된 건들(34건) 임
- 2014/10/7 5차 산재은폐 실태조사(2014.6~8월) 후 집단진정(32건)
- * 조사기간 12건, 현장20건 총32건 적발 (현재 조사 중)

- 2014/5/20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의원은 현대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955억 7,323만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았다고 보도 자료를 냈. 현대중공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이유는 산재건수 발생이 줄었기 때문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산재발생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산재은폐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보고되는 산재발생건수가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⑥ 노동자들 치료받을 권리,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사고 및 질병 요양결정 현황

(단위: 명,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계	사고	질병	계	사고	질병	계	사고	질병	계	사고	질병
계	111,088	95,941	15,147	104,726	91,342	13,384	103,292	90,158	13,134	10,241	9,174	1,067
불승인	12,443	5,099	7,344	11,434	5,297	6,137	11,036	5,374	5,662	980	582	398
불승인율	11.2	5.3	48.5	10.9	5.8	45.9	10.7	6.0	43.1	9.6	6.3	37.3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연도별 심의대상 질병 요양결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월		
	계	불승인	불승인율	계	불승인	불승인율	계	불승인	불승인율	계	불승인	불승인율
합계	10,379	6,633	63.9	9,417	6,052	64.3	9,267	5,662	61.1	1,464	654	55.3
뇌심혈관질환	2,780	2,379	85.6	2,475	2,156	87.1	2,300	1,950	84.8	372	70	81.2
근골격계질환	6,163	3,221	52.3	6,054	3,267	54.0	6,129	3,135	51.2	943	523	44.5
직업성 암	174	143	82.2	150	114	76.0	168	114	67.9	23	8	65.2
정신질환	95	80	84.2	104	79	76.0	129	86	66.7	22	6	72.7
세균성질환	163	65	39.9	129	52	40.3	101	60	59.4	21	12	42.9
간질환	60	51	85.0	83	71	85.5	64	56	87.5	7	0	100
기타	944	837	88.7	422	427	101.2	376	375	99.7	76	35	53.9

2. 노동자 건강권 현실이 심각한 원인은 무엇인가?

① 사회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이윤이 우선하는 자본의 논리가 우위에 있다.

② 1993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어 안전관련 규제완화가 꾸준히 관철되고 있다.

* 당시 특조법 50여개 항목 중 안전관련 규제완화가 26개 조항.

③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 기본법’은 법령, 조례, 규칙을 대상으로 규제완화

* 안전감독,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구조 등 무력화를 지속하였고 각종 안전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력화시킴

④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완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노동자 건강권은 더욱 더 나빠지고 있음.

⑤ 2007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원청이 도급을 주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유해위험작업이기 때문이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청노동자가 원청 노동자보다 2.53배 산재가 더 많이 발생했고, 파견업체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보다 1.78배 높음

○ 다단계 하청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에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는데 건설업은 약90% 내외, 조선업은 약 65% 내외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약 51개 사업장 원청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청을 주는 이유의 40.8%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응답 함

■ 하도급을 주는 이유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40.8%
하청의 임금 수준이 낮으므로	28.2%
노사분규 줄이기 위해	15.5%
4대 보험료 부담 감소	2.8%
산재를 낮추기 위해	0%

■ 하도급을 준 공정이 위험해서 산재 발생 가능성은

높다	7.8%
대체로 높다	41.2%
보통이다	39.2%
대체로 낮다	7.8%
매우 낮다	3.9%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강화 방안] 2007. 산업안전공단

⑥ 다치고 병들고 장애를 얻고 죽어나가는 노동자는 있으나 책임지는 사업주는 없다. 하지만 산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는 사업주이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면서 산재나 사망사고 시 원청 책임문제가 사실상 회피되면서 책임문제도 숨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이나 산재가 발생한다면 고용관계를 떠나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엄격히 묻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산재사망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절실하다.

⑦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이어서 90% 미조직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으로 노동자 기본권 확보와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가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노동안전보건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3.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안

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끝까지 국민이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자.

② 자본의 무한탐욕을 위한 규제완화 저지해야 한다. 그간 안전보건 규제완화 내용들을 복원시키고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③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 중단하고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사용 중단해야 한다.

④ 원청 사업주 책임강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노동 기본권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



북구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건강지원사업

참 고 자 료

북구지역 노동자 건강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북구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1. 사업목표

- (1) 근골격계 질환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 (2) 건강권 사업을 통해 미조직노동자와 조직노동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노동자 건강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한다.
- (3) 근골격계질환 및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 사업주체

- (1) 사업주체명 : 북구지역 노동자 건강지원사업단
- (2) 참가단위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미조직특별위원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노동사회위원회, 울산이주민센터, 평화와건강을위한의사모임
- (3) 구성 : 기획팀, 의료팀, 정책팀, 캠페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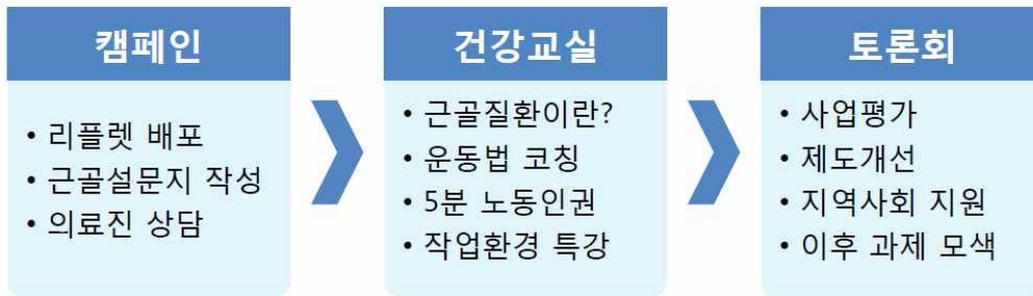
기획팀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과 실무를 담당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준비
의료팀	근골상담 및 이론, 운동처방, 의료지원시스템 자문 : 평화와 건강을 위한 의사회, 지역 한의사 및 약사로 구성
정책팀	산업안전보건단체 및 지역시민사회단체 실무진으로 구성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준비
캠페인팀	공개모집 : 희망자 모집, 자원봉사 인증 역할 : 공단캠페인 및 건강교실 등을 지원

- (4) 사업연계 단위 및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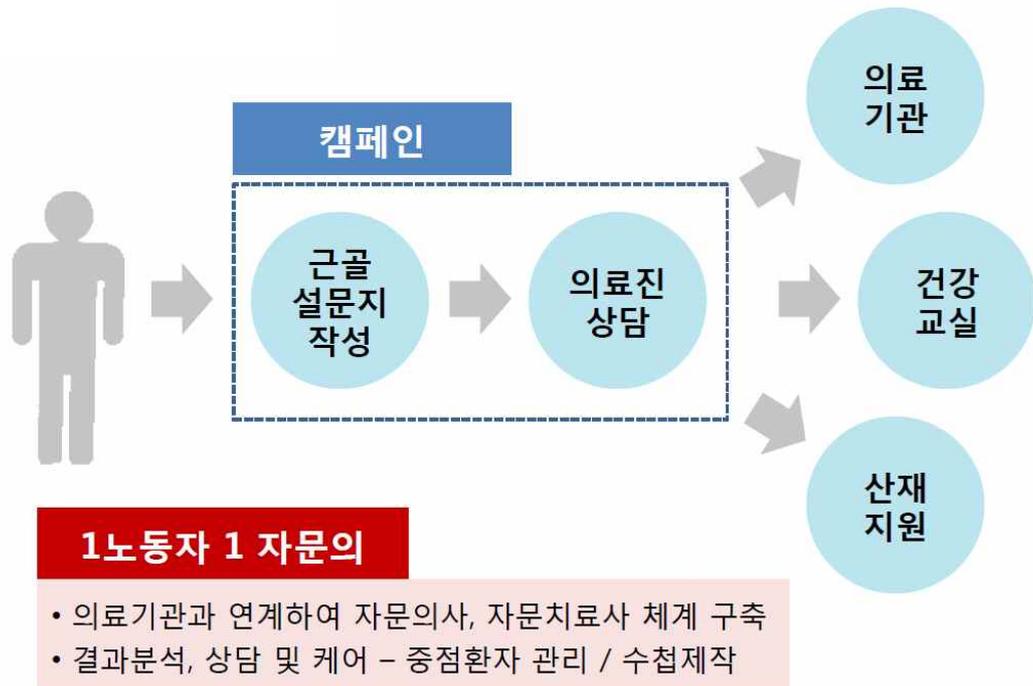
단위	사업연계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인력지원(자원봉사자, 의료진), 교육 및 장소 협조기로 함
울산근로자건강센터	공단별 1회 캠페인 검진 진행기로 함
울산세민병원	채혈담당 의료기관, 검진진행시 의료진 및 차량지원
현대자동차지부 교육위원회	하반기 조합원 오후 선택교육 : 캠페인 참여

3.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2) 진행흐름



(3) 캠페인 일정 및 역할분담

일정		장소	의료진
매곡 공단	9/15(월) 11:30~13:00	자동차부품혁신센터 1층 식당앞 로비	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건강지원사업단
	9/16(화) 11:30~13:00		
	9/17(수) 11:30~13:00		
	9/18(목) 11:30~13:00		
	9/19(금) 11:30~13:00		
달천 공단	9/22(월) 11:30~13:00	① 달천공단협의회 건물 1층 로비 ② 한성금속 앞 공동식당	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건강지원사업단
	9/23(화) 11:30~13:00		
	9/24(수) 11:30~13:00		
	9/25(목) 11:30~13:00		
	9/26(금) 11:30~13:00		
효문 공단	10/13(월) 11:30~13:00	지식산업센터 1층 로비	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건강지원사업단
	10/14(화) 11:30~13:00		
	10/15(수) 11:30~13:00		
	10/16(목) 11:30~13:00		
	10/17(금) 11:30~13:00		
시례 공단	10/21(화) 11:30~13:00	섭외중	노동자건강지원사업단
	10/22(수) 11:30~13:00		
	10/23(목) 11:30~13:00		

(4) 건강 실태조사

- (1) 설문항목 : 사업단과 근로자 건강센터 동일한 설문지 사용키로 함
 - ① 근골격계 질환 조사 10-15문항 - 근로자건강센터 등록카드 근골관련 항목 대체
 - ② 영양 및 건강 상태 15문항 - 근로자건강센터 설문지 + 3문항 추가
 - ③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문항 18문항
- (2) 설문방법
 - 자원봉사자가 설문 안내 (1인 1노동자 설문)

(5) 의료진 상담

- (1) 캠페인시 현장 상담 : 1. 실태조사에 근간한 상담 (재활의학 중심)
- (2) 건강교실 진행시 상담 :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상담
(재활의, 내과 또는 가정의학의)

(6) 건강검진 및 채혈

- (1) 기본검진 내용 및 인력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검사 및 체성분 검사, 근골격계 검사,

스트레스 검사, 개인별 상담

- ① 보건소 : 보건소 담당자 1명, 운동처방사 1명, 자원봉사자 5명, 지원물품 등
 ② 근로자건강센터 : 의사1명, 간호사2명, 심리상담사1명, 물리치료사 1명, 인바디2대, 혈압-혈당계 2대, 리피도 2대, HRV(자율신경계균형검사)1대

(2) 채혈 및 방법

- (1) 내 용 : 영양상태 및 건강(혈액, 간, 소변), 원심분리기
 (2) 예상인원 : 200명 예상
 (3) 채혈주체 : 세민병원

(7) 건강교실 일정

공단	일 정	장 소	내 용
매곡공단	10/01(수) 저녁7시	매곡공단 시설	근골격계 이론, 실습
	10/08(수) 저녁7시		성인병(뇌심혈관계 질환 등)
달천공단	10/15(수) 저녁7시	달천공단 시설	근골격계 이론, 실습
	10/22(수) 저녁7시		성인병(뇌심혈관계 질환 등)
효문공단	10/29(수) 저녁7시	효문공단 시설	근골격계 이론, 실습
	11/05(수) 저녁7시		성인병(뇌심혈관계 질환 등)
시례공단	11/12(수) 저녁7시	시례공단 시설	근골격계 이론, 실습
	11/19(수) 저녁7시		성인병(뇌심혈관계 질환 등)
전체	11/26(수) 저녁7시	북구비정규센터	직업병 및 작업환경

※ 캠페인단 교육 : 2014년 9월 12일(금) 오후 6시,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업체 노동자 건강검진 실태조사

사업체 실태조사는 노동자건강검진 사업 후,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체 기본현황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팩스설문을 진행하였다. 많은 사업체가 설문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참고할 만하여 자료집에 실는다. 총 7문항 중 사업체 건강검진 시기와 유소견자 현황과 유소견자에 대한 조치문항은 신지 않았다. 지속적인 사업을 감안하여 추가로 현황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업체가 노동자건강검진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내용	응답수	비고
건강진단기관(병원)을 지정하여 실시	5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장(혹은 공단)을 방문하여 실시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직장가입자건강검진 이용	7	
개별노동자이 알아서 실시		
미응답	6	

■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병의원, 공단)으로부터 건강진단표를 받는지?

내용	응답수	비고
받는다	19	
받지 않는다	4	
미응답	0	

■ 건강검진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유소견자가 있었는지?

내용	응답수	비고
있었다	6	
없었다	13	
잘 모르겠다	4	
미응답	0	

■ 노동자건강지원사업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내용	응답수	비고
기본검진 외 근골격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등 예방 관리로 차별화한다.	8	
건강진단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검진 사후 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한다.	12	
취약계층노동자 건강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	
작업환경 개선과 직무자세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	
기타		
미응답	0	

울산복구 사업체 노동자건강검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노동자건강지원사업단이 지난 9월 15일~10월 23일까지 북구지역 공단 (매곡공단, 달천공단, 효문-지식산업센터, 시례공단)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검진사업은 울산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 사업으로,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지역사회의 의료지원시스템을 만들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단위 사업장의 노동자건강검진 관련 기본현황과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사업이 공단노동자를 비롯하여 사업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2014년 11월



울산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작성후 12월 2일까지 팩스 송신을 부탁드립니다. 팩스 052-286-0830 | 문의 052-286-7990

사업장명	지역	동	번지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노동자 건강진단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 ① 건강진단기관(병원)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 ②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사업장(혹은 공단) 방문 검진으로 실시한다.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직장가입자건강검진을 이용한다.
- ④ 개별 노동자들에게 맡겨둔다.

2. 귀하의 사업장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시기는 연중 언제입니까?

연도	단체검진	개별검진
2013년	월	월
2014년	월	월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근로자 수		
	남	
	여	

실시 기간	제1차	-
	제2차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등록번호	
업종코드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 생산품:
--------------------	---------

건강진단 현황

구분	대상 근로자			수진 근로자			질병 건수			질병 유소견자						요관찰자			제2차건강진단 미수검자		
										계			일반병		직업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사무직																					
기타																					
질병 유소견자 현황(다른 면 기재 가능)	구분		계			직업경력별						나이별									
						1년 미만		1-4년		5-9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질병코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사후 관리 현황	구분		계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치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그 밖의 사항			
						질병별															
	질병 유소견자		계		계																
					남																
					여																
			일반질병		계																
					남																
					여																
	직업병		계																		
			남																		
여																					
요관찰자		계																			
		남																			
		여																			

작성일자: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¹⁾

:

실시기간:

공정(부서)	성명	성별	나이	근속 연수	건강 구분	검진 소견 ²⁾	사후관리 소견 ²⁾	업무수행 적합 여부 ²⁾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 2)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

질 병 소 견 코 드 표

	질병 코드	질 병 소 견		질병 코드	질 병 소 견
일반 질병 소견	A	특정 감염성 질환	직업성 질병 소견	207	시염화탄소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208	아세톤
	C	약성신생물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애		210	이소부틸알코올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F	정신 및 행동장애		212	이황화탄소
	G	신경계의 질환		213	크실렌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214	클로로포름
	I	순환기계의 질환		215	톨루엔
	J	호흡기계의 질환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K	소화기계의 질환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애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301	니켈(니켈카르보닐 포함)
	O	임신, 출산 및 산욕		302	망간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303	베릴륨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04	삼산화비소
	R	그 밖에 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305	수은
	S	손상		306	연(4알킬연 포함)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307	오산화바나듐
	V	운수사고		308	카드뮴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309	크롬
	X	고온장애 및 자해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애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401	벤지딘(염산염 포함)
	Z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402	불화수소
	직업성 질병 소견	110		소음성난청	403
121		광물성 분진	404	아황산가스	
122		면 분진	405	암모니아	
123		석면 분진	406	염소화비페닐	
124		용접 분진	407	염소	
129		그 밖의 분진	408	염화비닐	
130		진동장애	409	염화수소	
141		고기압	410	일산화탄소	
142		저기압	411	질산	
151		전리방사선	412	콜타르	
152		자외선	41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53		적외선	414	페놀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415	포름알데히드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애	416	포스겐	
201		노말렉산	417	황산	
202		N,N-디메틸폼아미드	418	황화수소	
203		메틸부틸케톤	499	그 밖의 산·알칼리·가스상태류에 의한 장애	
204		메틸에틸케톤	코크스	500	휘발성 콜타르 피치 (코크스 제조·취급에 의한 장애)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그 밖의 사항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애
206		벤젠			
유기 화합물 의 중 독	207	시염화탄소	유기 화합물 의 중 독	208	아세톤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코올		210	이소부틸알코올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212	이황화탄소		212	이황화탄소
	213	크실렌		213	크실렌
	214	클로로포름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5	톨루엔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애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애
	301	니켈(니켈카르보닐 포함)		301	니켈(니켈카르보닐 포함)
	302	망간		302	망간
	303	베릴륨		303	베릴륨
	304	삼산화비소		304	삼산화비소
	305	수은		305	수은
306	연(4알킬연 포함)	306	연(4알킬연 포함)		
307	오산화바나듐	307	오산화바나듐		
308	카드뮴	308	카드뮴		
309	크롬	309	크롬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애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애		
산·알 칼리· 가스 상태 물류 에 의 한 장애	401	벤지딘(염산염 포함)	산·알 칼리· 가스 상태 물류 에 의 한 장애	402	불화수소
	403	시아나화물		403	시아나화물
	404	아황산가스		404	아황산가스
	405	암모니아		405	암모니아
	406	염소화비페닐		406	염소화비페닐
	407	염소		407	염소
	408	염화비닐		408	염화비닐
	409	염화수소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1	질산
	412	콜타르		412	콜타르
	41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41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414	페놀		414	페놀
	415	포름알데히드		415	포름알데히드
	416	포스겐		416	포스겐
	417	황산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8	황화수소
499	그 밖의 산·알칼리·가스상태류에 의한 장애	499	그 밖의 산·알칼리·가스상태류에 의한 장애		
500	휘발성 콜타르 피치 (코크스 제조·취급에 의한 장애)	500	휘발성 콜타르 피치 (코크스 제조·취급에 의한 장애)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애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애		

영양 평가 설문지

회사명		이름		상담일	
-----	--	----	--	-----	--

영양		1. 우유나 칼슘강화두유, 기타 유제품(요구르트 등)을 매일 1컵(200ml)이상 마신다. <input type="checkbox"/> 항상 그런 편이다(5)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3) <input type="checkbox"/> 아닌 편이다(1)			
		2.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매일 3회 이상 먹는다. <input type="checkbox"/> 항상 그런 편이다(5)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3) <input type="checkbox"/> 아닌 편이다(1)			
		3. 김치 이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 <input type="checkbox"/> 항상 그런 편이다(5)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3) <input type="checkbox"/> 아닌 편이다(1)			
		4. 과일(1개)이나 과일 주스(1잔)를 매일 먹는다. <input type="checkbox"/> 항상 그런 편이다(5)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3) <input type="checkbox"/> 아닌 편이다(1)			
		5. 튀김이나 볶음요리를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주4회 이상(1) <input type="checkbox"/> 주2~3회(3) <input type="checkbox"/> 주1회 이하(5)			
		6.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삼겹살, 달걀노른자, 오징어 등)을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주4회 이상(1) <input type="checkbox"/> 주2~3회(3) <input type="checkbox"/> 주1회 이하(5)			
		7.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 음료수(커피, 콜라, 식혜 등) 중 1가지를 매일 먹는다. <input type="checkbox"/> 항상 그런 편이다(1)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3) <input type="checkbox"/> 아닌 편이다(5)			
		8. 젓갈, 장아찌, 자반 등을 매일 먹는다. <input type="checkbox"/> 항상 그런 편이다(1)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3) <input type="checkbox"/> 아닌 편이다(5)			
		9. 식사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다. <input type="checkbox"/> 항상 그런 편이다(5)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3) <input type="checkbox"/> 아닌 편이다(1)			
		10. 곡류(밥, 빵 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류 등 총 5종류 식품 중에서 하루에 보통 몇 종류의 식품을 드십니까? <input type="checkbox"/> 5종류(5) <input type="checkbox"/> 4종류(3) <input type="checkbox"/> 3종류(1)			
		11. 외식(직장에서 제공되는 식사 제외)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주5회 이상(1) <input type="checkbox"/> 주2~4회(3) <input type="checkbox"/> 주1회 이하(5)			
영양 상태	지난 2일간 매끼 식사를 하셨습니까?	1일전	아침 ①예 ②아니오	2일전	아침 ①예 ②아니오
			점심 ①예 ②아니오		점심 ①예 ②아니오
			저녁 ①예 ②아니오		저녁 ①예 ②아니오
영양 점수 총점					
평가기준 (절대기준은 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양호 : 37~55점 <input type="checkbox"/> 보통 : 27~35점 <input type="checkbox"/> 나쁨 : 11~25점			

근골격계질환관리 증상조사표

차트번호

이름

날짜

근무지

부위						
	목	어깨	팔/팔꿈치	손목/손	등/허리	무릎/다리
통증유무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통증위치	<input type="checkbox"/> 양쪽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아래 항목들은 통증 유무에 예 라고 √ 표시한 항목에만 답해 주십시오.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증상이 얼마동안 지속됩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증상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통증 부위: 목 어깨 팔 손 허리 고관절 무릎 발 기타()

아픈 정도에 해당하는 통증수치를 체크해 주세요√

통증정도(VAS):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전혀 통증이 없음) (가장 심한통증)

1. 위 통증 때문에 작업속도나 정상적 작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약간 있다. 다소 어려움이 있다. 매우 어렵다.

2. 위 통증이 작업장 밖에서의 귀하의 활동을 방해합니까?

아니오. 예, 약간 방해받습니다. 예, 다소 방해받습니다. 예, 많이 방해 받습니다.

3. 위와 같은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치료받지 않은 경우 바로 4번으로 이동)

개인비용으로 공상처리 사내 휴업치료 산재처리 치료받지 않았다.

3-1.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상이 미약해서 일하기 바빠서 해고/임금 등의 불이익 우려 때문에

4. 위 증상은 작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있다. 약간 있다. 없다. 모르겠다.

사회 ·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내용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3	2	1	0
2.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하지 않다.	0	1	2	3
3.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낀다.	0	1	2	3
4. 근심 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0	1	2	3
5.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3	2	1	0
6. 기력(원기)이 왕성하다고 느낀다.	3	2	1	0
7.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진다.	0	1	2	3
8.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3	2	1	0
9.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3	2	1	0
10.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3	2	1	0
11. 어떤 일을 바로 착수(시작)할 수 있다.	3	2	1	0
12.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3	2	1	0
13. 안절부절 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된다.	0	1	2	3
14. 닥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3	2	1	0
15. 불행하고 우울하다고 느낀다.	0	1	2	3
16.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진다.	0	1	2	3
17.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3	2	1	0
18.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3	2	1	0

0~8점 : 건강군 / 9~26점 : 잠재적 스트레스군 / 27~54점 : 고위험스트레스군

